

설계 운영회비 관련 규정

제정 2020. 3. 10.

개정 2020. 8. 4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.) 회칙(이하 “회칙”이라 한다.) 제33조 규정에 따른 설계 운영회비의 부과,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설계 운영회비(이하 “운영회비”라 한다.)라 함은 회원이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협회의 운영을 위해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.

제3조(납부대상) 회원은 대구광역시 내의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및 「주택법」에 따른 사업승인대상 건축물, 공고금액 5,000만원 이상의 관급 설계업무를 수행할 경우 운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4조(산정원칙) ① 회원은 제3조의 납부대상에 대해 150원/㎡의 운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50원/㎡와 설계비의 1%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.

1. 「건축법」 제11조에 따른 대수선허가
2. 「건축법」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
3.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른 기설건축물허가

③ 단, 공장, 창고용도 건축물은 산정된 운영회비의 1/2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④ 운영회비의 건당 한도금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

⑤ 「대구광역시건축사회 운영회비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운영회비는 감면한다.

제5조(납부시기) ① 회원은 제3조의 납부대상에 대해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신청 시 제4조에 따른 운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건에 대하여 협회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납부대상에 대한 현황을 수집하고, 납부기간을 정하여 회원에게 청구하며, 회원은 그 기간 내에 운영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준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관 및 제규정, 회칙 등을 준용할 수 있다.

제7조(유권해석) 이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유권해석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.

제8조(규정의 개정) 회장은 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정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운영상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 적용)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(부 칙) <2020. 8. 4. 개정>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허가신청분부터 시행한다.